

분류기호 문서번호	주개30321-16	기안용지 (전화: 731-6393)		시행상 특별취급
보존기간	영구·준영구 10.5.3.1	시 장		
수신처 보존기간				
시행일자	86. 11.			
보조 기관	건설관리국장 전결	협 조 기 관	법무담당관 (고시안심사)	
	주택개발과장		지적과장	
	개발2계장			
기안책임자	심관중(오천군)			
경유 수신 참조	각안참조	발 신 명 의	시 장	
제 목	주택개발재개발구역 도시계획 용도지구(용치) 및 시설(공원)일부 변경결정에 대하여			
다른 지적승인고시	고시제 478호			
(제 1 안) 내부결재	86. 11. 12			
1. 건설부고시 제226호 (86.5.17)로 도시계획 용치지구 변경결정 및				
건설부고시 제500호 (85.11.16)로 도시계획시설(공원)일부 변경결정에 대하여				
2. 도시계획법 제13조(도시계획에 관한 지적등의 고시) 제2항 및 같은 법				
시행령 제6조(권한위임)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별첨도면을 승인하고 도시계획법				
시행령 제8조(고시) 및 제9조(도면의 종류등)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별첨(고시안과				
같이 그내용을 고시하고자 합니다.				
첨부 지적승인 고시도면각1부				
(제 2 안)				
수신	총무처장관			
제 목	관보게재의뢰			

1505-25(2-1)일(1장)
85.9.9 승인

190 mm x 268 mm 인쇄용지 2 급 60 g/m²

1. 주택개량재개발 장흥 제1구역의 1개구역에 대하여 별첨고시문사본과
같이 고시하였기 관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첨부 고시안 사본2부.
(제 3 안)
수신 건설부장관
참조 도시개발과장, 도시계획과장, 녹지과장 ^{공원}
제목 상동
1. 건설부고시 제225호 (86.5.17)로 도시계획 풍치지구변경결정및 건설부고시 제500호 (85.11.16)로 도시계획시설(공원)일부 변경결정에 대하여
2.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별첨 고시문 사본및 도면과 같이 지적승인고시하였기 보고합니다.
첨부 1. 고시안사본 각1부
2. 도면 각1부
(제 4 안)
수신 수신처참조
참조 주택과장
제목 상 동
1. 건설부고시 제226호 (86.5.17)로 도시계획 풍치지구 변경결정및 건설부고시 제500호 (85.11.16)로 도시계획시설(공원)일부변경에 대하여 별첨 고시문 사본및 도면과 같이 지적승인고시하였기 통보 하니

2.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일반인에게 보이고 도시계획

업무처리에 착오없도록 할 것이며 도시정비과에 통보할 것.

첨부 고시안 사본 및 도면 각1부

수신처 총로구청장, 중구청장

(제 5 안)

수신 수신처참조 *126P*

제목 갑은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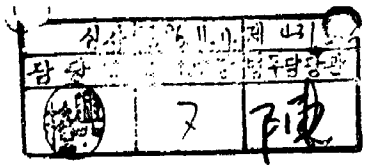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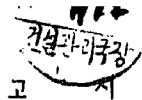
1. 건설부고시 제226호 (86.5.17)로 도시계획 품치지구 변경결정밀

건설부고시 제500호 (85.11.16)로 도시계획시설(공원)일부변경에 대하여 별첨

고시본 사본 및 도면을 통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첨부 고시안 사본 및 도면 각1부. 끝.

수신처 도시계획과, 시설계획과, 공원과장,



고 시 안

서울특별시 고시 제 호

"주택개량재개발구역 도시계획 용도지구(풍치), 시설(공원) 일부해제에
다른 변경 지적승인 고시"

1. 건설부고시 제226호 (86.5.17)로 도시계획 풍치지구 변경결정및 건설부
고시 제500호 (85.11.16)로 도시계획시설(공원)일부 변경에 대하여 도
시계획법 제13조및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지적승인하였기에 동법시
행령 제6조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.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건설관리국 주택개량과 및 관할구청 주택과와 도시
정비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인다.

1986. 11.

서울특별시 장

○ 풍치지구 일부해제, 공원일부해제

구 분	구역명	위 치	면 적 (m ²)			비 고
			정 기	변 경	변경후	
풍치지구 일부해제	창릉제1구역	중구장충동 197 번지일대	1,046,500	16,352	1,030,148	건고시 226호 (86.5.17)
근린공원 일부해제	창신제1구역	종로구창신동 9 번지일대	170,700	8,950	161,750	건고시 500호 (85.11.16)

○ 승인 지적도 : 생략